

의안번호	2215599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5C7257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(학생예술인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	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에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를 추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(학생예술인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(안 제1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경우, 조사방식에 따라 비

용이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조사의 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조사방식을 특정하기 어렵고 학생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 실태조사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의 발생 여부 및 비용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3에 따라 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, 문화예술 관련 협회·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실태조사(인권침해 조사 포함)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
 - － 최근 조사는 2024년에 모집단 33.4만명(표본 5천명)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, 약 241백만원이 소요됨

□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 설치(안 제21조제5항)

-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내 학생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·운영되고 있고,¹⁾ 현시점에서 새로운 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회의횟수 등을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

(단위: 회)

구분	분과위원회				분쟁조정*	전체위원회	합계
	예술인 권리보장 1분과	예술인 권리보장 2분과	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분과	소계			
2024	9	9	5	23	9	11	43
2025	7	7	6	20	10	8	38

* 분쟁조정은 사건 해당 분과위에서 조정위원 구성하여 진행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1)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,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구성('23.1.26.) 이후, 위원회 운영 비용은 (2023년) 64,173천원, (2024년) 68,696천원, (2025년) 77,458천원임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